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73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정 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2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2인
2. 제안일 : 2025. 12. 5.
3. 회부일 : 2025. 12.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 등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참전유공자법」의 개정('25.9.16.)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고엽제법」 적용 대상자 중 ‘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의 배우자는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따라서, 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이분들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 7조의10 등).

Ⅲ. 검토의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 개정안은 수당 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하고, 수당 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10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u>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u> 로서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 대상자) ----- <u>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한다) 및 -----</u> --.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등록 등) ① ----- ----- ----- ----- ----- --.
1. ~ 3. (생략) <u><신설></u>	1. ~ 3. (현행과 같음) <u>4.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u>

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
람이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
제후유의증환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가 아닌 다른 사
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② ~ ⑥ (생략)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서류 확인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 결과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 결과 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출된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신청인이 이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한다. 다만,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 중 해당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⑧ (생략)

제4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 8. (생략)

<신설>

<신설>

②·③ (생략)

----- 경우
또는 제4조제1항제4호의 배우
자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

--.

⑧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 그 배
우자 및 고엽제후유증 -----

-----.

1. ~ 8. (현행과 같음)

9.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0.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
하는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10(생계지원금) 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중 80세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을

제7조의10(생계지원금) ①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80세 이상의 배우자-----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

-----이 법-----

1. ~ 5. (현행과 같음)

② ----- 이 법에 따라 지원-----

2. 제4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 -----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또는 그 배우자 및

2세환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 --
3. ~ 11. (생략)	3.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 보훈 관계 법령은 생계가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에게는 ‘생활조정수당’을,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¹⁾에게는 ‘생계지원금’을 지급함.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개요>

구분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사업 내용	◦ 생계가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수당 지급	
대상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배우자('26.3.17.시행) ◦ <u>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 대상자: 본인</u>
근거	◦ 독립유공자법 제14조, 국가유공자 법 제14조, 보훈보상자법 제13조	◦ 참전유공자법 제6조의3, 고엽제법 제7조의10, 5·18유공자법 제89조의2,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5조의2
지급 기준	◦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생계곤란자	◦ 80세 이상으로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생계곤란자
지급 액	◦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최소 24.2만원~최대 37만원	◦ 매월 15만원
지원 현황	◦ ('25년 결산 기준) 지급인원 26,381명, 집행액 908억원	◦ ('25년 결산 기준) 지급인원 8,629명, 집행액 103억원

자료: 국가보훈부

1) 상이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전공상군경으로 간주되어 그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지급 타 대상자와 달리 참전유공자와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본인에게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최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2025.9.16. 개정, 2026.3.17. 시행)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 현행법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즉, 법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²⁾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³⁾의 대부분은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⁴⁾ 본인 사망시 그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이하 “국내고엽제환자”라 함)의 배우자는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이에 개정안은 국내고엽제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홀로 남는 배우자를 지원 하고 대상자간 형평을 기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 추산에 의하면, 개정안에 따라 국내고엽제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연간 약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개정안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단위: 명, 천원)

구 분	'26	'27	'28	'29	'30	'31
고엽제 배우자 인원	21,943	22,731	23,667	24,757	26,007	27,424
국내고엽제 배우자	658	682	710	743	780	823
80세 이상 인원	167	173	180	189	198	209
생계곤란자 인원(A)	22	23	24	25	26	28
적용단가(B)	150	150	150	150	150	150
소요예산(A×B×12개월)	39,600	41,400	43,200	45,000	46,800	50,400

* (월참고엽, 국내고엽 구분) 월남고엽제환자와 국내고엽제환자 등록 비율로 구분(97:3)

* (고엽제 배우자 80세 이상 비율 25.4%) 월남전 참전 무공수훈자의 배우자 연령 비율 적용

* (생계곤란자 비율 13.2%) 80세 이상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비율 적용

* (적용단가) '26년 생계지원금 단가 적용

자료: 국가보훈부

□ 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및 체계 자구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안 제3조에서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배우자’를 ‘배우자’로 약칭하고 있는데, 이하 제8조의2, 제8조의5⁵⁾ 등에서 일반적 의미의 배우자가 사용되어 해석에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칭을 보다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배우자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정의하면서 이하 같다고 하여 동일한 정의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제7조의9와 제8조의5에서 배우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⁶⁾를 말한다”라고 정의한 것은 각각 삭제할 필요가 있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양로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5(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3조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 셋째, 안 제28조의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와 관련하여,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는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예7)를 참고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호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됨을 명시하고, 안 제2

-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③ ~ ⑦ (생략)
-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8조제2항의 지원 제외에서는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고엽제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는 생계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나, 국내고엽제환자의 배우자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대상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7

